

2001. 5. 25(금)
제70회임시회제2차본회의

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및제출자 : 2001. 5. 16. 제천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01. 5. 16.
- 다. 상 정 일 자 : 2001. 5. 21(제70회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 (제안설명자 : 도시건축과장 신승우)

가. 제안사유

- 도시계획법시행령(2001. 1. 27 대통령령제17,111호)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법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관련된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설치에 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의 대지 경계로부터 20m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한함.
-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내용을 개정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윤종철)

▣ 법 적 검 토

-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법시행령제51조제1항 및 동법부칙 제7조제2항 관련 별표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범위내에서 관련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,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며

-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3조에 의거 제천시보에 게재하여 입법 예고(2001. 4. 6 ~ 4. 28)를 실시하였으며,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19규정에 의거 2001. 5. 15 제천시조례·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제반절차를 준수하여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.

■ 행정적 검토

-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으로 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의 설치는 공원·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거리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규정되었는바,
- 제천시에서는 2001. 3. 2 ~ 3. 29간 제천시도시계획위원회위원과 건축위원회위원 중 민간인위원 15명에게 자문의뢰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“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”를 주거지역으로부터 20m 이내로 하되 거리를 산정함에 있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경계로 하는 도로의 폭원을 합산하도록 정하였음.
- 위와 같은 개정안이 도시계획법시행령의 개정취지인 상업지역 안의 대지에서의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하도록 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함에 부합되는지에 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함.

4. 질의 답변 요지

가. 질의요지

- 이 조례에 의해서 상업지역에서 일반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을 건축하겠다는 신청이나 자문을 받아 본적이 있는지,
또한 민원인이 이런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(김병창 위원)
- 도시계획법시행령이 바뀐에 따라서 주거지역 대지로부터 20m 떨어져 건축해야하는데, 제천시관내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어떻게 되는지?
(민경환 위원)

- 개정 전에는 주거환경보호를 위해서 몇m로 규정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처음 신규로 20m를 두는 건지? (민경환 위원)
-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을 신축했을 때 경계되는 지역의 대지의 건축주들이 주거환경피해를 보기 때문에 거리제한을 두는지? 20m라고 하는 경계선에 걸리는 대지는 상업지역에서 일반숙박 시설이나 위락시설은 건축을 할 수 없는지? (민경환 위원)
- 없던 사항을 규제하는 건데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과 경계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항을 홍보해 보셨는지? 입법예고를 하셨는데 시민들이 관심있게 보시고 의견을 개진했다고 보시는지, 민원의 소지는 없겠는지? (민경환 위원)
-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민원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람. (민경환 위원)

나. 답변요지 (도시건축과장 신승우)

- 사전에 검토의뢰해서 했고, 신청이나 자문을 받아 본적이 있음.
- 도시계획지역내 상업지역이면 다 해당됨.
일부 면급 도시계획에서는 상업지역에서 제한을 많이 받음.
- 주거지역으로부터 20m 이내의 상업지역에는 일반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을 건축할 수 없음.
- 법적 절차는 거쳤지만 개개인에게 의견을 듣기는 힘들다고 봄.
- 상업지역에 속하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해당되는 지역에는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을 하지 못해서 피해를 본다고 할 수 있고 주거지역에 있는 분들은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양면성이 있음.

5. 소 수 의 견

“ 없 음 ”

6. 토 론 요 지

“ 없 음 ”

7. 심 사 결 과

“ 원 안 가 결 ”

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제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. 끝.